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여신신청인)

1. 문자, 이메일 통지

통지내용	신청구분
이자납입(예정일, 예정금리), 원리금상환(납입예정일), 대출금리변동 * 서비스 제외 대상: ① 대지급, 가지급, 특수채권 ② 어음할인(상업, 전자, CP매입 포함) ③ 결제성상품(단, 후취대출인 구매대, 공공구매론은 이자납입예정일만 통지) ④ 지급보증 ⑤ 사모사채 ⑥ 무역금융관련여신(단, 무역어음대출은 통지)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 안내사항 1.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는 여신차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해당 내역에 대해 1회 통지되며, 대출금이 연체중이거나 고객사정(휴대폰 전원꺼짐, 통화 불능 지역, 스팸등록 등)이 있는 경우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지 내용은 각 통지 기준일에 작성된 것으로, 기준일 이후 대출내역(대출금액, 금리 등)이 변경된 경우 통지 내용은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통지여부 및 내용과 상관없이 약정에 따라 이자(원리금)를 납입해야 합니다. 3. 연락처 및 서비스 변경신청은 콜센터(1599-1111),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기 및 실행통지

구분	구분	신청구분
만기안내	우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SMS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미수신
대출 신규(대환, 재약정) 실행통지	우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서면통보불요

※ 대출금 연체시 우편 안내문 및 문자통지는 통지생략 여부에 상관없이 앞면의 우편물 수령처 및 휴대폰번호로 발송됩니다.
 본인은 상기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기타 신청사항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제공자 의사확인 (신청인 포함)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대출 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원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유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대출은 1면 부동산 담보정보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된 다음의 근저당권으로 계속 담보됨을 확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순위(설정일자): _____ • 접수번호(동기부등본 올구 기준): _____ • 채권최고액: _____ 원 	담보제공자(신청인 포함): _____ (인)
대출금 입금 (실행)계좌	원(리)금 및 이자 자동이체 결제계좌	
무인감 · 무통장 출금 동의	본인이 부담할 원금, 원리금, 이자에 대하여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없이 출금 처리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여신신청인(차주): _____ (인)
예금 담보 등 상계 후 잔액 반환계좌번호 (담보제공자 기준)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입금 계좌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결제 계좌 <input type="checkbox"/> 별도 지정(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 담보제공자와 반환계좌의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함.	담보제공자(신청인 포함): _____ (인)

